

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, 임원의 장기 재직과 회사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퇴직 보상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대상)

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이사, 감사 및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- 임원** : 본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최종 보수월액** : 퇴직 당시의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(직책수당 등)의 합계액을 1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단, 상여금, 판공비 등 비정기적이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은 제외한다.
- 재임 연수** : 임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 기간을 말하며,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,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.

제2장 퇴직금 지급 기준

제4조 (지급 사유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.

- 임기 만료
- 사임
- 사망

4. 정년 퇴직 (별도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)
5. 정리 해고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
6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직

제5조 (퇴직금의 산정)

1.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퇴직금} = \text{최종 보수월액} \times \text{재임 연수} \times \text{지급률}$$
2. **지급률**은 임원의 직위 및 회사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 - **대표이사** : [2]배
 - **전무이사 / 상무이사** : [2]배
 - **이사 / 감사** : [2]배
3. **재임 연수**는 1년 단위로 계산하되,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. (예 : 2년 6개월 → 2.5년)

제6조 (명예퇴직금 가산)

1. 회사의 발전 및 경영 성과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외에 별도의 **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**할 수 있다.
2. 명예퇴직금의 지급 기준, 금액 및 절차는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 (퇴직금의 감액 및 미지급)

1. 임원이 재임 기간 중 **횡령, 배임 등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,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**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 범위는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.
2. 회사가 파산, 회생 절차 개시 등 중대한 재무적 위기에 처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,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.
3. 관련 법령에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다.

제3장 지급 절차 및 기타

제8조 (지급 절차)

-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, 담당 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에 보고한다.
-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는 퇴직금 산정 내역을 심의하고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승인한다.
- 승인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**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**으로 합니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 (세금 및 공제)

퇴직금은 관련 세법(소득세법 등)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.

제10조 (규정의 개정)

본 규정은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.

제11조 (준용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관계 법령, 회사의 정관, 그리고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제12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[YYYY년 MM월 DD일]부터 시행된다.

부칙

-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